

■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16호

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
부수업무 신고 사실을 공고합니다.

2022년 1월 18일
금융위원회 위원장

- 다 음 -

1. 부수업무 신고 기관 : 롯데카드(주)

2. 부수업무의 신고일 : '22.1.10.

3. 부수업무의 내용

-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
- 정보관리계좌 제공
- 금융 및 비금융상품 광고

*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제6항1호, 제11조의2제
6항2호, 동 시행령 제11조의2제4항1호, 동 규정 제13조의4제4항2호